•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295호 2022. 2. 14.(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09호(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3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회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 - 209 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사용에 따른 신규 등록 및 미사용에 따른 폐기

2. 공인 등록일: 2022. 2.10.(목)

3. 공인명 및 인영

□ 등록공인 목록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 송도3동통합민원6		2.4×2.4	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 송도3동통합민원6		2.4×2.4	세로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송도3동장인 통합민원전용6		2.1×2.1	가로
송도3동장인 통합민원전용6		2.1×2.1	세로

□ 폐기공인 목록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 송도2동통합민원3		2.4㎝×2.4㎝	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 송도2동통합민원3		2.4㎝×2.4㎝	세로
송도2동장인 통합민원전용3		2.1㎝×2.1㎝	가로
송도2동장인 통합민원전용3		2.1㎝×2.1㎝	세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3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시행)으로 연수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

3. 주요내용

❍ (안 제1조)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

❍ (안 제2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조문 삭제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toyhy8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종전의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실과별 /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령 / 비고 총무과 / 1 / 직원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 지방자치법 제91조 /	[별표 1] <삭　제>
[별표 2] (생　략)	[별표 1] (종전 별표 2와 같음)
[별표 3] (생　략)	[별표 2] (종전 별표 3과 같음)

【참 고】 관련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③ 생략